

# 제 3 장

## 추후보도 게재 사례



## 제3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 사례 27

2018서울조정545·546, 547·548(병합) 각 추후·손배청구  
미투관련 보도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중재부가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

#### 보도내용

- 시사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조교인 대학원생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추후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강요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각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린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추후보도로서 게재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지난 0월 0일, A대 B학과 대학원생 C씨가 8일째 ‘1인시위’를 견뎌내고 있었다.

시위는 건물 ○층을 향한다. B학과 D교수의 연구실이 있는 곳이다. 한때 C씨가 자주 드나들던 일터였다. [중략] 지난해 ○월 ○일 오후 ○시께, D교수가 C씨를 학교 근처 주점으로 불렀다. “내 가방을 들고 와라” “논문 지도를 해줄 테니 (논문) 연구계획서도 가져오라”는 지시였다. D교수는



술 마실 때면 종종 C씨를 술자리로 불러냈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운전까지 시켰다.

술잔이 돌고 있었다. D교수, D교수의 또 다른 제자, A대에서 강의하던 E교수가 함께 있었다. 처음부터 D교수의 말이 거칠었다. “C씨는 남자였어야 해. (중략) 전 조교는 총각 교수(나)한테 오는 애가 밤에 일 시키려고 부르면 옷을 이상하게 입고 향수도 뿌리고 왔다. 갠 너무 여자로 어필해서 문제였는데 애(C씨)는 함부로 건드렸다간 검찰에 끌려갈 것 같아.” D교수의 이야기를 듣던 E교수가 갑자기 욕을 했다. [중략]

“너희 교수(D교수)가 결혼도 안 한 총각이니 가끔 만져주고 그래.” 조 교수의 말에 갑자기 D교수가 이씨의 왼쪽 팔목을 덩석 잡더니 자기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어딜 만져달라 그럴까, 여기 만질까? 여기?” C씨는 팔목에 힘을 쥐 정 교수의 몸을 건들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술집 여자가 된 것처럼” 강한 수치심이 치밀었다. [중략]

자퇴를 길게 고민할 여유도 없었다. 아팠던 일주일 사이, 학과 사무실로부터 ‘조교가 교체됐으니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전자우편으로 받았다. 이유를 따져 물으려 했지만 정 교수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오히려 연구실 출입만 정지당했다. 이후 공동연구조교에게서 “(업무 불성실로) 내가 해임되면서 너(C씨)도 공동 책임으로 해임됐다”는 등의 석연치 않은 사유만 전해들었다. 성추행 사건과 연관된 부당해고가 분명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에 학교 양성평등센터를 찾아가 신고했다. 한 달여 뒤엔 검찰에 고발했다. 강제로 팔을 잡아당긴 지도교수 D교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욕설을 한 조 교수는 ‘모욕’ 혐의였다. E교수의 발언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특별한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 교수라 처벌 근거가 없다”고 변호사가 말했다. [중략]

상황이 좋지 않다. 검찰은 D교수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지만, 앞서 3월 경찰은 D교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이 벌어진 주점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저장 기간(15일)은 이미 끝났고, 술자리에 함께한 다른 제자도 C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상태다. D교수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내 스스로 거짓 말 탐지기(조사)까지 받았다. (C씨의) 거짓 성희롱 주장에 대해 이미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조교 해촉과 관련해선, 술자리가 있기 전인 11월 14일 이미 (업무 불성실을 이유로 C씨에게) ‘해촉될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 적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E교수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후략]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지는 ○년 ○월 ○자 [ ] 제하의 기사에서 A대학교 B학과 D교수가 대학원생 C씨를 성추행했고, 그 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C씨를 조교에서 부당하게 해임했으며, C씨는 지도교수 변경 승인이 되지 않아 제적 처리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D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C씨의 주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C씨는 재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C씨가 D교수를 강요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별도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려 확정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피신청인 매체 C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해당 보도문의 제목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과 같게 하며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 본문의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C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C면 첫페이지에 나타나도록 한다. 단, 해당 추후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조정대상보도가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 위 사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면과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례 28

## 2018서울조정1508·1509 추후·손배청구

신청인이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무죄 확정되어 추후보도한 사례

## 보도내용

-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피신청인은 철거민 관련 협회의 대표인 신청인이 철거민들을 속여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겨왔고,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2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되었다며 추후보도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 보도에 언급된 혐의와 관련,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선고, 검찰에서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 조정결과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무혐의사실을 밝히는 추후보도를 게재함으로써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서울북부지검 ○부는 철거민들을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철거민협의회 A 상임대표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대표는 2013년부터 1년여 간 서울 ○구 ○지역 회원 B모씨에게 집회에 참가하는 등 투쟁활동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회비 등의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대표는 1980년대부터 철거민 운동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비리 추문에 휩싸여 잠시 활동을 접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지역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을 전부 고소인 B씨의 돈인 것으로 보고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회원 일부는 오는 ○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벌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 회원도 이 대표를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입증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정신청 후 보도문

본 신문은 ○년 ○월 ○일 홈페이지에서 [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북부지검 ○부가 철거민들을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철거민협의회 A 상임대표를 구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 보도와 관련하여 A대표의 혐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A대표가 1990년대 비리추문에 휘말려 활동을 접기도 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례 29

## 2018서울조정1721·1722 추후·손배청구

언론사 간부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로 노동조합이 검찰에 고발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 중재부가 추후보도 게재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

## 보도내용

- 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이 언론사 간부인 신청인을 노동조합이 금융실명제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 보도에 언급된 혐의와 관련,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무혐의 사실을 추후보도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1

전국언론노동조합이 A언론사 B상무를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6일 오전 노동조합과 기자협회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상무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사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언론은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석탄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에 납품해왔던 페이퍼컴퍼니 'C업체' 설립자 D씨의 죽음을 다루며 B상무가 환치기상을 통해 D씨에게서 4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C업체 실소유자와 친분이 있는 B상무가 2014년 말 1억 원을 소유자에게 입금하고 모 업체 주식을 제3자 배정받았다고 보도했다. B상무가 투자한 주식은 배당 직후 주가가 급등해 주가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해당 회사의 배후에 A언론사 간부가 연루됐었다는 소문이 퍼진 바 있다. [중략]

B상무는 본지와 통화에서 “검찰수사로 오히려 저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 조정대상보도2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A언론사 B상무의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노조는 B상무의 사의 소식을 전하며 “검찰 수사가 임박했는데 나가서 수사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진작에 사측이 파면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일 B상무를 금융실명제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 ○언론은 인도네시아 석탄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에 납품해왔던 모 페이퍼컴퍼니 설립자인 D씨의 죽음을 다루며 B상무가 환치기상을 통해 D씨에게서 4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자와 친분이 있는 B 상무가 2014년 말 1억 원을 소유자에게 입금하고 모 업체 주식을 제3자 배정받았다고 보도했다. B 상무가 투자한 주식은 배당 직후 주가가 급등해 주가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B 상무는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로 오히려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지는 ○년 ○월 ○일 [ ] 제하의 기사에서 A언론사 B 전 상무가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자인 C 모씨로부터 환전상을 통해 4천만 원을 받아 외환거래법을 위반하고, D업체 주식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차명으로 송금해 금융실명거래법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E언론사와 노동



조합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혐의에 대해 A언론사 B 전 상무는 2018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단,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접속 시 최초로 나타나는 화면에 ○년 ○월 ○일시간 동안 위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 홈페이지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피신청인 홈페이지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이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기사들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도 위 사항을 즉시 전송하여 포털에서도 위 사항들이 검색되도록 한다.



### 사례 30

#### 2018서울조정2412 추후청구

신청인의 횡령 혐의를 보도했으나 검찰의 무혐의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히 추후보도를 게재한 사례

####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업사의 재산을 차지하고 임직원도 내쫓은 ‘악덕기업인’이라는 취지의 동업사 직원들의 규탄시위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후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 보도에 언급된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조정결과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무혐의 사실을 밝히는 추후보도를 게재함으로써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A협회와 B기업 임직원 일동은 10일 C중앙회 부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였다.

아울러 C중앙회 부회장(D사 대표)은 흡수합병 후 동업하다 최근 동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 결별을 선언한 B기업에 10억 원 가량의 가스용기와 15억 원 상당의 라이선스 등 30억 원 가량의 재산을 즉각적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B기업 임직원들에 따르면 D사와 B기업은 고정자산과 영업라이선스 등을 D사 측에 양도와 직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지난 ○년 ○월 공동사업을 의결했다. 당시 D사는 B기업을 대표하는 E씨와 D사 지분 50%를 보유한 F씨의 아들인 G씨가 공동대표를 맡아 운영했다.

그러나 공동대표가 들어선 이후 D사의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각종 불법과 탈법 탈세 등이 발각



되면서 지분 25%씩을 보유한 C대표 일가가 D사를 장악, 경영을 맡았다. 하지만 두 동업사는 내부갈등에 따른 불신으로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B기업 임직원들은 D사 대표 등이 B기업 측 대표가 D사의 비리를 캐낸 것에 앙심을 품고 B기업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소를 제기한 뒤 임시주총을 열어 해임조치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월 B기업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손을 들어주었다.

B기업 측은 D사의 횡포에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30억 원 가량의 재산 이전을 요구했으나 D사가 번번이 이를 묵살하자 지난 6월 C대표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횡령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고양지청에 고소한데 이어 이날 C대표의 부회장에서 퇴진 규탄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B기업에 일했던 직원들이 C대표의 횡포로 직장을 잃고 가계대출 등으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힘없는 자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C중앙회 부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후략]

### 조정신청 후 보도문

C부회장은 지난 ○월 ○일 본지가 보도한 [ ] 제하의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본 신문은 이 기사에서 “B기업 측은 D사의 횡포에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30억 원 가량의 재산이전을 요구했으나 D사가 번번이 이를 묵살하자 지난 6월 C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횡령혐의 등으로 고양지청에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C부회장 측은 “C부회장이 10월 2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경제기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기사의 ‘횡령 혐의’를 ‘무혐의’로 바로 잡습니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